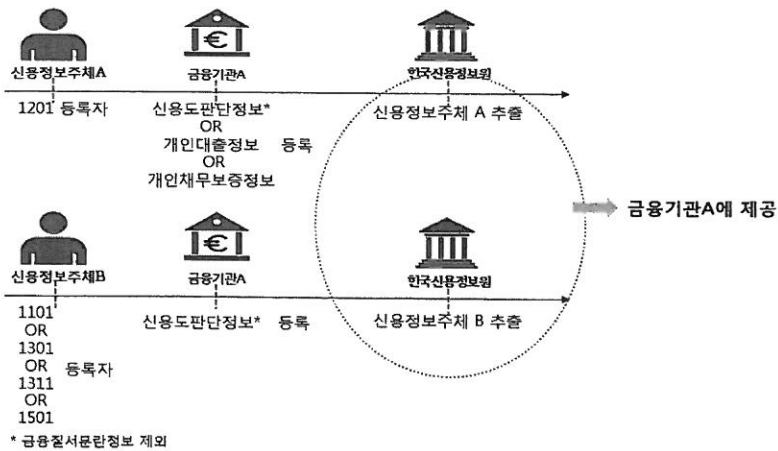


일반신용정보 모니터링 신규 항목별 시행 안내

1 공공정보 등록 주체 대상 신용정보 집중 현황 제공

- (개요) 신용회복 및 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등록된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착오 등록한 경우 조속한 조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자료 제공
- (제공 자료) 금융기관의 특정신용정보* 집중 대상자 중 신용회복 및 회생 관련 공공정보**가 등록되어있는 신용정보주체 리스트
 - * 신용도판단정보 중 금융질서문란정보를 제외한 정보, 신용거래정보 중 개인대출 정보, 카드거래정보 및 개인채무보증정보
 - ** 1.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(1101)
 - 2.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(1201)
 - 3.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자(1301)
 - 4. 개인회생 개시 전 보전처분 중자금지명령 등을 받은 자 또는 개시결정을 받은 자(1311)
 - 5.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확정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(1501)

【자료 추출 기준】



- (제공 방식 및 주기) 한국신용정보원 통합업무시스템 내 주 단위로 자료 업로드*
 - * 다운로드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재안내 예정
- (조치 방법) 착오 등록된 정보인 경우 등록취소(77) 처리
- (시행일) '18.3월~

2 사업자에 대한 식별번호 정비 대상 정보 제공

- (개요) 과거 등록된 사업자*에 대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(또는 법인등록번호)가 누락되어 있는 정보의 정비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
 - * 현재는 사업자 대상으로 정보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(또는 법인등록번호)를 일괄 등록하는 것이 원칙
- (제공 자료) 자료 추출 시점 기준으로 각 금융기관별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(또는 법인등록번호)가 누락되어 있는 정보
- (제공 방식) 한국신용정보원 통합업무시스템 내 비정규파일로 제공
- (조치 방법) 누락되어있는 식별번호를 추가하여 정정 처리*
 - * 정비 여부 확인을 통해 일괄 조치 완료 예정(추가 실시 없음)
- (제공 시기) '18. 1월 중

3 발생내역별 등록 기준 정비 대상 정보 제공

- (개요)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제14조제5항*의 정보별 등록 원칙에 위배되어 등록된 정보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 제공
 - *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제14조제5항 : 금융기관은 개인대출정보,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, 연체정보등은 발생내역별로 등록하고 그 외 일반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별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

- (제공 자료) 금융기관이 집중한 발생내역별 등록 기준 정보 중 계좌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정보*
* 단, 신용카드대금연체(0104) 및 부도정보(0401~0404)는 제외
- (제공 방식 및 주기) 한국신용정보원 통합업무시스템 내 주 단위로 자료 업로드*
* 다운로드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제안내 예정
- (조치 방법) 누락되어있는 계좌번호(또는 고객번호)를 추가하여 정정 처리
- (시행일) '18년 상반기 중(확정 후 제안내 예정)

4 기록보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등록금액 정정 처리 내역 제공

- (개요) 정보의 등록금액 정정으로 보존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제재금 발생 및 해당 주체의 신용도 변동 등 영향이 있는 바, 착오 처리인 경우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내역을 제공
- (제공 자료) 정보별로 다음의 추출기준에 해당하는 처리를 한 정보

[리스트 추출 기준]

정보 구분	추출 기준
카드론대금 연체	- 등록금액이 5백만원 이하이며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정보의 등록금액을 5백만원이 초과하게 정정 시
신용카드대금 연체	- 등록금액이 5백만원 초과이며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정보의 등록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정정 시
할부금융대금 연체	- 등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며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정보의 등록금액을 1천만원이 초과하게 정정 시
그 외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정보 (무담보미수채권, 공단 신용보증대지급금정보 제외)	- 등록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며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정보의 등록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정정 시

- (제공 방식 및 주기) 한국신용정보원 통합업무시스템 내 주 단위로 자료 업로드*
* 다운로드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제안내 예정
- (조치 방법) 착오 정정인 경우 정확한 금액으로 재처리*
* 예시) 1. 착오 정정 후 현재 등록상태인 정보: 등록금액 재정정
2. 착오 정정 후 해제와 동시에 삭제된 정보: 올바른 등록금액으로 재등록
- (시행일) '18. 3월~

5 양·수도 채권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 집중 알림서비스 시행

- (개요) 금융기관이 집중한 신용정보에 양·수도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* 채권자변동정보 집중 대상임을 SMS 또는 이메일로 알림 메시지 제공
* ① 개인대출 카드론 정보를 최초 채권기관코드 11~19(신규취급이 아닌 모든 경우)로 하여 등록 처리 시
② 신용도판단정보를 구분코드 17(금융기관 양도)로 하여 해제 처리 시
- (제공 방식) 한국신용정보원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이메일 주소 및 휴대폰번호 수집·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메시지 발송(추후 제안내 예정)
 - ① (이메일 전송) 한국신용정보원 통합업무시스템 가입 시 제출한 이메일 주소*로 전송
 - ② (SMS 전송) 한국신용정보원 통합업무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전송
* 개인대출정보 집중 권한이 있는 사용자(아이디)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
- (제공 내용) 상기의 신용정보 집중 내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 집중 필요 사실 및 집중 대상 건수를 통보*
* 메시지 예시) 귀 기관이 x월x일 전송한 개인대출정보에 양수채권 x건 포함. 채권자변동 정보 집중 요망 or 귀 기관이 x월x일 전송한 신용도판단정보에 양도채권 x건 포함. 채권자변동정보 집중 요망
- (시행일) '18. 3월~

6 비정상적 정보 집중 차단

- (개요)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법 및 규약에 위배되거나 해당 주체를 대상으로 집중 불가능한 정보 등을 집중 시 이를 처리하지 않고 오류 통보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정보를 사전 차단
 - (차단 정보)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는 처리하지 않고 오류코드 통보
 - ① (연체금액 > 등록금액인 신용도판단정보) 연체금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하는 신용도판단정보 집중 시 '501' 오류코드(기초데이터 검증 오류) 통보
 - ② (신용정보주체별 등록 불가능 정보) 카드대출정보(0037,0041), 학자금대출관련(0115,0116,0117,0118,0208,0209) 및 주택자금대출관련 연체정보(0102), 가계수표부도정보(0401)는 개인만 등록 가능 주체 이므로 그 외 주체를 대상으로 집중 시 '501' 오류코드(기초데이터 검증 오류) 통보
 - ③ (면책정보 등록자에 대한 개인회생신청등정보) 파산면책(1201)정보가 등록된 주체에 대하여 파산면책결정일 이후 날짜의 사유발생일로 개인회생신청등(1311) 정보 집중* 시 '526' 오류코드(파산면책자 대상 등록 불가 정보) 통보
- *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5조 제5호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 불가
- (시행일) '18.2월~